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행정소송 응소방침

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.

1. 사건내역

- 사 건 명 : *****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
- 당 사 자 : 원 고 *** 외 2명
피 고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

- 소 가 : *****
- 관할법원 : 서울행정법원 제4부

2. 청구취지

-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-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3. 청구원인

- 원고는 상속등기 후 그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지분보다 과소신고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

4. 관계법령 :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, 동법 제103조 및 제103조의 3

5. 응소이유

-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에 지방소득세 부과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면 지방소득세 부과도 정당함.
- 따라서, 역삼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2,458,137,880원을 적법하게 부과하였으므로

이를 과세표준액으로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245,813,780원의 부과처분도 정당하므로 본 소송에 응소하고자 함.

6. 소송수행자 : 지방세무주사 이덕배, 지방세무주사보 배진열

붙임 소장 사본 1부. 끝.

주무관 **배진열** 지방소득세 1팀 **이덕배** 세무2과장 **김광수** 기획경제국장 전결 07/14
문경수

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장 **박도규**

시행 세무2과-24153 () 접수 ()
우 135-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713 /전송 02-3423-8834 / jydream@gangnam.go.kr / 부분공개